

의안번호	제 455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##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3년 11월 10일

#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

의안 번호	455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3년 11월 10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 1. 제안사유

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.

## 2. 주요내용

- 2024년 기금운용계획(총괄)

(단위 : 백만원)

2023년도말 조성액(A)	2024년도 운용계획			2024년도말 조성액(E=A+D)
	수입(B)	지출(C)	증감(D=B-C)	
1,236,711	333,693	315,274	18,419	1,255,130

- 2024년 기금별 조성액

(단위 : 백만원)

기금명	2023년말 조성액(A)	2024년말 조성액(B)	증감 (C=B-A)
<b>계 (15개)</b>	<b>1,236,711</b>	<b>1,255,130</b>	<b>18,419</b>
청소년육성기금	6,713	6,774	61
양성평등기금	180,242	174,964	△5,278
통합재정안정화기금	4,689	3,831	△857
지역개발기금	1,966	1,982	17
자활기금	31,614	38,789	7,175
사회복지기금	11,374	10,976	△398
체육진흥기금	2,894	2,953	59
남북교류협력기금	43,437	54,805	11,368
고향사랑기금	150	342	192
중소기업육성기금	30,977	39,595	8,618
투자진흥기금	35,702	26,112	△9,590
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	6,217	6,149	△68
재난관리기금	1,492	1,468	△24
식품진흥기금	31,191	31,443	251
환경보전기금	848,053	854,947	6,895

## 3. 의안전문 : 첨부 (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)

## 4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□ **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(기금운용계획)**

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-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-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의안번호	제 455-1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##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3년 11월 28일

#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

의안  
번호 455-1

제출연월일 : 2023년 11월 28일  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 1. 제안사유

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.

## 2. 주요내용

- 2024년 기금운용계획(총괄)

(단위 : 백만원)

2023년도말 조성액(A)	2024년도 운용계획			2024년도말 조성액(E=A+D)
	수입(B)	지출(C)	증감(D=B-C)	
1,236,711	333,693	315,274	18,419	1,255,130

- 2024년 기금별 조성액

(단위 : 백만원)

기금명	2023년말 조성액(A)	2024년말 조성액(B)	증감 (C=B-A)
<b>계 (15개)</b>	<b>1,236,711</b>	<b>1,255,130</b>	<b>18,419</b>
양성평등기금	6,713	6,774	61
통합재정안정화기금	180,242	174,964	△5,278
남북교류협력기금	4,689	3,831	△857
자활기금	1,966	1,982	17
사회복지기금	31,614	38,789	7,175
식품진흥기금	11,374	10,976	△398
체육진흥기금	2,894	2,953	59
중소기업육성기금	43,437	54,805	11,368
고향사랑기금	150	342	192
재난관리기금	30,977	39,595	8,618
환경보전기금	35,702	26,112	△9,590
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	6,217	6,149	△68
청소년육성기금	1,492	1,468	△24
투자진흥기금	31,191	31,443	251
지역개발기금	848,053	854,947	6,895

## 3. 의안전문 : 첨부

## 4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□ **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(기금운용계획)**

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
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
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